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, 도정현안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2,969명 → 3,028명 (+59명) (안 2조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75명 → 1,460명 (△15명)
  - 소방공무원의 정원 : 1,382명 → 1,456명 (+74명)
-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(별표 2)
  -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총정원 감소에 따른 직급별 비율조정
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
현 재	1%이내	7%이내	22%이내	22%이내	48%이상
조 정	1%이내	11%이내	30%이내	34%이내	24%이상
증 감	-	+4%	+8%	+12%	△24%

○ 직급·직종별 정원조정 내역(별표 3)

- 일반직 20명 증원 (5급이하 +20명)
- 별정직 1명 감원 (5급상당이하 △1명)
- 소방직 74명 증원 (소방정 +1명, 소방령이하 +73명)
- 기능직 34명 감원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, 도정현안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 내용은,

집행기관의 정원을 1,475명에서 1,460명으로 15명 감원하고,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,382명에서 1,456명으로 74명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2,969명에서 3,028명으로 59명 증원하고,

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총정원 감소에 따라 기능직 정원채정기준을 6급은 7% 이내에서 11% 이내로, 7급은 22% 이내에서 30% 이내로, 8급은 22% 이내에서 34% 이내로, 9급은 48% 이상에서 24% 이상으로 조정하고,

직급·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